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한마음, 별빛 어린이집〕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1월 23일
미래·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22년 11월 7일
- 나. 제출자: 강서구청장
- 다. 회부일자: 2022년 11월 11일
- 라. 상정일자: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상정·의결(2022.11.23.)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제안이유

국공립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가정어린이집 및 위탁 운영기간 만료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사무를 경제적 효율성,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성 등이 높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부칙 제3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시설개요

연번	어린이집명	행정동	소재지	면적 (㎡)	정원 (명)	위탁체	위탁기간
1	구립 한마음어린이집	염창동	양천로 637, 101동 103호 (염창동, 삼성한마음아파트)	85	19	(개인) 임종화	신규위탁 (가정전환)
2	별빛어린이집	등촌1동	공항대로55길 22	413	84	(개인) 배진희	2018. 6. 15. ~ 2023. 5. 31.

○ 위탁사무 내용

- 어린이집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보육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 영유아 보호와 교육, 예산계획 및 집행, 보육교직원 임용 및 전문성 증진을 위한 교육
- 부모교육 및 가정과 지역사회간의 연계 및 교류

○ 위탁기간(예정)

- 구립 한마음어린이집: 2023. 3. 1. ~ 2028. 2. 29. (5년)
- 별빛어린이집: 2023. 6. 1. ~ 2028. 5. 31. (5년)

○ 수탁자 선정방식: 심의자료 접수 후 강서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선정

○ 소요예산(2023년 기준)

(단위:천원)

연번	어린이집명	합 계	인건비	운영비
1	구립 한마음어린이집	136,695	132,597	4,098
2	별빛어린이집	378,631	370,940	7,691

나. 추진일정

- 2022. 04월: 서울시 2022년 제1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 통과
- 2022. 08월: 보건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전환 심의 선정
- 2022. 08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계획 수립

- 2022. 10월: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 원안가결
- 2022. 11월: 구의회 민간위탁 동의
- 2022. 12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서류 제출 안내
- 2023. 01월: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 2023. 01월: 협약체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4조의2
-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제7조, 제10조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권오숙)

- 본 동의안은 구립어린이집 2개소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 구립 한마음어린이집은 가정보육시설을 장기임차하여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계획¹⁾에 따라 구립으로 전환하는 시설이고

1) 2022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서울시 보육담당관, 2022. 02. 18.): 2022년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50% 달성 및 시설비율 39% 달성 목표

- 별빛어린이집은 신규가 아닌 기존 위탁시설로 위탁기간이 만료예정되어 재위탁(재계약)하고자 하는 시설임
- 현재 강서구 312개소의 어린이집²⁾ 중 국공립은 92개소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더욱 확충해 나가야 하는 실정³⁾이며, [참고: 서울시 자치구별 국공립 이용률·시설비율 현황]
- 구립 어린이집 운영사무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기준에 의거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에 해당되고, 해당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2022. 10. 21.) 결과 ‘적정’ 심의완료 하였음

2) 강서구 어린이집 현황

(2022. 10. 31. 기준, 단위: 개소)

합계	국공립	법인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사회복지법인제외)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312	92	1	5	76	118	3	17

3) 연도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추진실적

(2022. 10. 31. 기준, 단위: 개소)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예정)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설치 개소수	12	8	4	3
국공립 어린이집 총 개소수	83	90	93	96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28.4%	35.2%	39%	41%

※ 강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1%** (국공립현원 **4,308명**/전체 어린이집 이용현원 **10,627명**)

- 위 내용을 검토한 결과 구립어린이집 확충의 필요성 및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 운영기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위탁)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의 기준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 다만, 보육료 지원 및 어린이집 지원 등 매년 많은 예산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고, 보육아동 감소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

※ 붙임 관계 법령 1부.

참고

서울시 자치구별 국공립 이용률 · 시설비율 현황

(2022.3.10.기준, 단위: 명, 개소)

구 분	국공립 이용률			국공립 시설비율		
	보육아동 수	국공립 아동수	이용률	전체 시설 수	국공립 수	비율
총 계	158,505	79,513	50.2%	4,979	1,824	36.6%
종로구	2,588	1,333	51.5%	74	32	43.2%
중구	2,643	1,254	47.4%	65	23	35.4%
용산구	3,627	1,592	43.9%	109	35	32.1%
성동구	5,135	3,551	69.2%	162	81	50.0%
광진구	4,717	2,378	50.4%	161	56	34.8%
동대문구	5,688	3,013	53.0%	188	77	41.0%
중랑구	6,885	3,024	43.9%	204	67	32.8%
성북구	6,463	3,425	53.0%	226	90	39.8%
강북구	4,587	1,931	42.1%	134	62	46.3%
도봉구	4,843	2,382	49.2%	188	66	35.1%
노원구	7,209	3,594	49.9%	328	93	28.4%
은평구	7,819	3,411	43.6%	228	84	36.8%
서대문구	4,850	2,580	53.2%	138	61	44.2%
마포구	6,094	3,571	58.6%	189	82	43.4%
양천구	6,973	3,570	51.2%	252	87	34.5%
강서구	10,307	4,305	41.8%	341	93	27.3%
구로구	8,290	4,104	49.5%	283	97	34.3%
금천구	4,405	2,090	47.4%	139	56	40.3%
영등포	8,456	3,799	44.9%	230	81	35.2%
동작구	5,840	3,410	58.4%	184	72	39.1%
관악구	5,930	3,376	56.9%	198	84	42.4%
서초구	6,956	4,049	58.2%	174	89	51.1%
강남구	6,552	3,538	54.0%	189	63	33.3%
송파구	12,376	5,749	46.5%	345	107	31.0%
강동구	9,272	4,484	48.4%	250	86	34.4%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는 500세대 이상으로 한다.

②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않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해당 공동주택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등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이 필요하지 않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한 경우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까지 사업주체와 국공립어린이집(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정원 및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분담비율 등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

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⑧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유서

2.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⑨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개정 2019. 12. 31.>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제24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공개경쟁을 통해 최초로 선정하여 신규 위탁하는 경우 개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선정한다.

나. 위탁과 관련한 모든 절차, 방법 및 심의 결과는 공개한다. 이 경우 위탁을 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라. 신청자격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운영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법 제16조 및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2) 최근 5년 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
- 3)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마. 제28조 각 호의 취약보육(영아·장애아·다문화아동·그 밖의 연장형 보육) 중 2가지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보육수요 조사 결과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약보육 실시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심사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및 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사. 집합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아. 심사결과, 신청 운영체가 모두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다시 공개 모집을 하여 위탁체를 결정한다.

2. 심사기준

심사항목 및 항목별 점수는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하며, 세부항목 등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심사항목	항목별 점수
가. 어린이집 운영계획	40
나.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35
다. 운영체의 운영실적	10
라. 운영체의 공신력	10
마. 운영체의 재정능력	5
합계	100

3. 심사결정

가.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합산 평균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를 위탁체로 결정한다. 운영체의 점수가 모두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위탁체를 결정한다.

나. 심사결과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제2호의 심사항목 중 가목(어린이집 운영계획), 나목(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다목(운영체의 운영실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4. 그 밖에 공고, 위탁계약 등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청소년·아동·가족 복지를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2. 노인·장애인 복지를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3. 보건·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4. 교통, 주차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5. 문화·예술·영상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6. 노동자복지, 자활, 취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7. 교육·교양·체육·공원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8.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 사무는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1년 단위 이하로 계약하는 연례 반복적 사무는 제1항과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한다.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보유 정도

2. 재정 부담능력 및 책임능력, 공신력

3.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연관성

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